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0.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0월 16일 이동주 의원 외 4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10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10월 2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동주 의원

가. 제안이유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안 제4조, 제5조)
- 4)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지원 및 업무의 위탁(안 제6조, 제7조)
- 5)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 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 나. 안 제3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 라.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마.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바.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 추진 및 필요 시 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사.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동(同) 조례안은 전 세계의 경제 위기에 따른 저성장과 모든 산업분야에서의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15년 8월 말 통계청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 고용률은 42.0%이고, 실업률은 8.0%로서 전년도와 비슷하나 실제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인턴사원, 시간제 취업 및 직원 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으로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미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실제 청년실업 원인을 보면

첫째,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일자리 수 부족, 청년들의 고학력화와 고연령화 및 3D 업종에 대한 기피 등 원인이 있으며

둘째,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원하는 기업체 등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고,

셋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정년 연장으로 그 만큼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들고,

넷째, 정규직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이 많아 구조적으로 청년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 구 일자리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1) 중소기업청, 마포구상공회 및 일자리센터 등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구인 구직 정보를 공유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2) 일용직, 계약직 위주의 단순한 일자리 제공보다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술 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고

3) 각종 행정서비스 규제완화와 마포구 관광활성화로 서비스업에 대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同) 조례안은 2015.10.19.~10.23.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담당부서 의견으로는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위법인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및 타 법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생활이 불안정하고 희망이 없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전에 기여하고
향후 지역발전과 사회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